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30264(본소), 2019나2030271(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추새아, 신길호

변론 종결 2020. 8. 21.

판결 선고 2020. 10. 16.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66220(본소), 56623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4,69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통틀어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2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0,5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0,799,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5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줄의 '하자보수비 합계액은 367,656,319원이다'를 '하자보수비 합계액은 367,656,319원이다(이 중 외벽 단열재 변경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311,867,142원이고, 8, 9층 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균열등 나머지 하자들에 대한 보수비용이 합계 55,789,177원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4줄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제1, 2계약서가 탈세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라면, 원고와 피고가 실제 합의한 계약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피고가 실제 합의한 계약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를 추가하고, 6쪽 13줄 이하의 '3' 내용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원고 대표이사가 2017. 2. 13. 피고의 조모 G와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을 제5호증), 원고가 제1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 측에 교부한 견적서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을 제1호증)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갑 제1호증)는 위 대화 무렵 비로소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14억 7,500만 원을 견적금액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전에 이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견적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까지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위 견적서를 처분문서인 제1, 2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1,037,025,0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2,975,000원(= 10억 7,000만 원 - 1,037,025,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32,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감정 결과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집행금액이 1,112,745,982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298,573,255원이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91다4263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이 367,656,319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상층 전체 외벽 단열재를 40T 열반사 단열재 1겹으로 시공한 것이 감정 결과 하자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I 과 협의하였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로이 단열재 포그니 40T의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며, 피고도 잔여 외벽 단열재 공사를

제3자에게 같은 시공 방법으로 마무리하게 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을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외벽 단열재 시공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법정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여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데, 하자보수비용은 311,867,142원에 달하여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의 교환가치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부터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I의 증언, 이법원의 주식회사 J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하자가 발생한 항목 및 그에 대한 각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중 외벽 단열재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311,867,142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지상 층 전체 외벽 단열재는 복합기능단열재 60mm 또는 경질 우레탄 보온판 100mm로 설계되었는데, 원고는 40mm의 열반사단열재1겹으로 시공한 사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삼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외벽의 열관류율 설계 기준을, 744.49㎡ 면적의 외벽(설계도면 표시 W1)에 대하여 0.189, 18.59㎡ 면적의 외벽(설계도면 표시 W2)에 대하여 0.227로 정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였던 I은 골조공사가 끝난 다음 위와 같이 변경 시공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⑤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여 외벽 단열재를 당초의 설계와 달리 변경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경 시공하였다는 외벽 단열재의 시험성적서(을 제7호증 203쪽,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증거보전신청사건의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I에게 교부하면서 검토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I과 외벽 단열재의 변경시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 또한 원고의 이러한 변경 시공을 알지 못한 사실, ⑦ 감정인은 현장의 시공 상태(40T열반사단열재1겹)가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따른 시공 방법(10T열반사단열재 4겹)과도 다르게 시공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법규 및 성능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후, 그 보수 방법으로 40mm 열반사 단열재를 한 겹 더 붙이는 방법과 기존의 단열재를 철거한 후 10mm 열반사 단열재 4겹 부착 및 내부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공이 용이 한 40mm 열반사 단열재를 한 겹 더 붙이는 방법이

적정하다고 보아 그 보수비용을 311,867,142원으로 산정한 사실, ⑧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외벽 단열재는, 외벽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석고보드 9.5mm + 공기층 20mm + 콘크리트벽체 120mm + 단열재(로이 단열재 포그니, 10mm × 4) 40mm + 공기층 20mm + 화강석30mm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결과 열관류율은 0.23인 사실, ⑨ 피고가 잔여 외벽 단열재 공사를 설계도면에 따라 재시공하지 않고, 외벽 내부 콘크리트 벽체의 안쪽 면에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외벽 단열재 변경시공 부분

가) 하자 여부

(1)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등 참조).

(2) 피고가 잔여 공사를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하지 않고, 외벽 내부 콘크리트 벽체의 안쪽 면에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시험성적서나 제1심 증인 1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변경시공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외벽 단열재를 시공한 점,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방법대로 시공한 외벽 단열재의 열관류율(0.23)은 법정기준(0.27)을 충족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열관류율의 설계기준인 0.189 및 0.227(외벽 대부분의 면적은 0.189로 설계되어 있다)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정한 방법과도 다르게 시공하여 원고가 시공한 외벽의 열관류율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열관류율을 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변경 시공사실을 알고 난 후 잔여 공사를 외벽의 건물 안쪽에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법으로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벽 단열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외벽의 열관류율에 미달하는 기능적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인지

외벽 단열재의 하자는 열손실을 가져와 건물 전체의 냉난방에 영향이 크고, 결로 등 추가적인 하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가 기대한 이 사건 건물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점(이를 보수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긴 기간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단열 기능에 미달하는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방법과도 다르게 시공하여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열관류율을 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시공한 외벽 단열재의 열관류율이 법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열관류율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기준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변경 시공으로 인한 외벽 단열재의 하자는 이 사건 건물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수비용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변경 시공한 외벽 단열재의 보수비용은 311,867,142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40mm 열반사 단열재를 한 겹 더 붙이는 방법을 제시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당초 설계인 60mm 열반사 단열재를 80mm로 보강하라는 내용으로 하자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40mm 열반사 단열재를 한 겹 더 붙이는 방법으로 보수함으로써 열관류율이 당초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감정인이 제시한 보수 방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책임의 제한에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금액(13억 7,500만원) 중 외벽 단열재의 시공과 관련한 대금은 원고 제출 견적서(갑 제1호증) 기준으로 직접공사비가 32,892,600원에 불과한 점(위 견적서에 기재된 단열재의 재료가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위 견적서의 공사 금액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외벽 단열재 관련 공사대금도 이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보수비용은 311,867,142원에 달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의한 시공 방법의 경우 열관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원고가 이와 달리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시공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열관류율도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그것과 일부 차이가 있을지언정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도 잔여 공사를 원고가 시공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감정인이 제시한 40mm 열반사 단열재를 한 겹 더 붙이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할 경우 40mm 열반사 단열재 2겹을 시공하는 결과가 되어 당초 설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외벽 단열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원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위 하자보수비용의 50%인 155,933,571원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외벽 단열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55,933,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머지 하자들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하자가 발생한 항목 및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하자 항목 및 그 보수비용'의 기재와 같고, 그 중 외벽 단열재의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 항목들의 하자보수비는 55,789,177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외벽 단열재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 항목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5,789,177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44,697,748원[=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32,975,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11,722,748원(= 155,933,571원 + 55,789,177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8.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 서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0.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여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갑석, 판사 김재령

별지

하자 항목 및 그 보수비용

번호	하자내용, 부위	관정결과			
		보수비 판정	가정 금액	가정 인정	
건축1	지하층 바닥 THK45배수관 미시공 / THK70무근콘크리트/배수시 제 인드 미시공	변경시공	●		
건축2	지하1층 콘크리트옹벽 누수	관리소통			●
건축3	지하1층 원형 지상층 사무실, 화장실, 당풍실 보하부 및 측면 THK140경질우레탄 단열제 미시공	미시공		●	
건축4	지하1층 원형 계단실 하부 THK140 슈퍼페닐(경질우레탄 단열제 2종2 호) 미시공	미시공		●	
건축5	지하1층 콘크리트 옹벽 상부 끝에서 1층 스타브 하부 내측으로 L=1m 역제방수 미시공	미시공		●	
건축6	지하1층 엘리베이터 샤프트 옹벽 내측 2면 THK80 슈퍼페닐(경질우레 탄 단열제 2종2호) 미시공	미시공	●		
건축7	지하1층 THK60 방습벽 미시공	미시공	●		
건축8	지상층 전채 외벽 단열제 규격 미달 제품 사용	변경시공	●		
건축9	전층 샤프트 내부 스타브 중간 방화구획 파이프 주위 시공 불량	경미사항			●
건축10	1층 엘리베이터 옹벽 주차장면 하부 역제방수 1종(H=0.6m) 미시공	미시공		●	
건축11	1층 샤프트 및 당풍실 상부 단열제 미시공	미시공		●	
건축12	3~7층 고시원실과 피난계단, 피난 발코니와 면한 실내면 벽체에 THK6 열변사 단열제 미시공	설계부실			●
건축13	3층 스타브 위 단열제 규격 미달 제품 사용 (THK60 슈퍼페닐(경질우레탄 단열제 2종2호)→THK5 아미온 보온재)	변경시공	●		
건축14	4~9층 스타브 위 단열제 규격 미달 제품 사용 (THK30 슈퍼페닐(경질우레탄 단열제 2종2호)→THK5 아미온 보온재)	변경시공	●		
건축15	2~9층 바닥 콘크리트부분 경질기포콘크리트 미시공	변경시공	●		
건축16	8~9층 주차단, 피난계단, 테라스와 면한 실내면 벽체에 THK15 열변 사 단열제 미시공	설계부실			●
건축17	3~4층 피난 발코니 벽체 하부 역제방수 1종(H=0.6m)미시공	미시공		●	
건축18	9층 테라스 벽체 하부 역제방수 1종(H=0.6m) 미시공	미시공		●	
건축19	8~9층 바닥 시멘트 불량 균열심함	부설시공	●		
건축20	옥상 벽체 하부 역제방수 1종(H=0.6m) 미시공	미시공		●	
건축21	7~9층, 옥상층 원형 단열제 규격 미달 제품 사용 (THK180 슈퍼페닐(경질우레탄 단열제 2종2호)→THK140슈퍼페닐(경 질우레탄 단열제 2종2호)	변경시공	●		
건축22	8~9층 화장 발코니 부분에 6층 이상 발코니 사용불가 LG Hausys 플 라스틱 경도제품 사용	변경시공	●		
건축23	외벽 마감재 THK30 화강석 미너, 고품석미너, 고품석콘크리트 혼용하 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으나 THK30화강석 단열재물로요한 시공하여 건물이 단조로움	변경시공			●
기계1	오세수 연결이음부속품(D.R.P)미사용	변경시공			●
기계2	급수, 급탕, 난방 세대 배밀관 보온재 두께 미달 및 미시공	하자제외			●
기계3	급수, 급탕 세대배관 연결 부속(E-Joint) 미사용하고 번딩처리함	변경시공			●
기계4	스프링클러 배수배관 강관을 PVC PIPE로 시공	변경시공			●
기계5	급수, 급탕, 난방, 소화 입상배관 보온재 두께 미달	변경시공	●		
기계6	고시원 및 주택 온수 분배기 주위 배관 1m 이상 보온재 미시공	미시공	●		
기계7	고시원 급수B50 배인배관 미시공	변경시공			●
기계8	B층 온수분배기 실코대 하부에서 발코니로 변경	변경시공			●

6.2. 하자보수비 집계표

[단위/원]

구분	계리비	노동비	경비	합계	간접 노동비	제정비						일반 관리비	이음	공사비 계	부가가 치세	합계
						신차 보험	교통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보험	문화 보험 비	안전 관리비					
건축1	1,581,881	1,096,304	13,425	2,541,594	95,594	42,962	9,973	12,277	25,302	2,804	740,691	996,982	233,715	3,333,764	333,336	3,334,100
건축6	138,728	84,866	-	223,594	7,595	3,522	808	1,440	2,113	671	6,923	14,906	16,420	279,998	28,000	307,998
건축7	1,800,000	-	-	1,800,000	-	-	-	-	-	5,400	52,740	111,488	25,440	1,935,073	289,677	2,224,750
건축8	44,422,098	36,538,475	2,335,902	70,946,463	14,534,377	6,557,311	1,483,765	2,644,854	3,553,094	609,048	5,815,430	14,392,863	1,997,722	28,155,564	2,931,598	31,087,162
건축11	494,963	340,761	-	794,944	22,923	10,400	3,322	4,147	6,075	2,217	23,653	40,522	54,336	381,554	91,135	1,001,710
건축13	56,938	82,230	392,683	900,731	7,729	3,508	763	1,336	2,047	1,864	15,422	36,929	29,620	990,698	98,907	1,089,605
건축14	1,000,735	486,188	1,936,415	3,483,338	62,922	10,900	4,437	2,925	11,698	4,671	45,617	191,682	105,326	3,838,954	383,885	4,222,839
건축15	381,844	32,826	50,693	440,283	3,524	1,636	300	644	940	1,321	11,419	27,765	26,432	506,282	50,620	556,902
건축19	25,233,396	19,276,422	-	42,961,388	30,664	408,464	92,804	124,609	25,889	34,389	375,032	906,790	2,027,716	18,084,474	1,808,447	19,892,922
건축21	1,986,522	2,664,185	142,728	4,403,263	250,428	113,967	25,166	4,250	96,306	13,259	124,636	302,548	952,722	5,107,298	980,730	6,088,027
건축22	819,230	-	-	819,230	-	-	-	-	-	30,907	352,885	196,720	236,528	934,634	94,428	1,029,062
기계5	117,386	234,730	-	332,116	30,188	9,362	2,944	3,654	5,948	987	9,736	23,000	43,338	448,942	44,864	493,807
배관장	3,022,500	682,500	895,000	3,000,000	64,155	28,120	6,406	11,605	16,094	11,700	108,657	298,867	205,259	4,038,797	403,881	5,042,678
합계	66,567,390	71,347,694	4,816,307	142,661,988	36,109,993	7,516,720	1,630,873	2,912,911	4,362,628	791,399	6,972,677	16,634,422	3,948,974	75,233,099	15,422,932	90,656,031

※ 본 표는 2017년 정부노임료가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나팔물 미적용)